

(주)서경방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약관주요 요약서

(주)서경방송

## 1. 계약의 성립

- ① (신청)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상가사대리인(부부) 또는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장 등 계약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		비고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	
개인	가입신청서/본인신분증	가입신청서/명의인신분증/위임장/대리인신분증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신청 위임장 구비 제외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등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 1 /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가입신청서/본인신분증/법정대리인가 입동의서(서명날인)/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입신청서/명의인신분증/법정대리인가 입동의서(서명날인)/위임장/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 운전면허증 제외) ※ 위임장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위임장(또는 인감)면제 가능			

- ② (가입제한) 타인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 첨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신청, 신용불량자의 가입신청,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신청은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계약서 교부) 고객이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상품, 이용료, 시설설치비 등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을 통해 가입 고객 본인에게 고지하며, 이용 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요금 및 납입방법,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해제, 계약의해지, 이용자 변경에 관한사항 등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계약서 등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수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요금과 상품.

고객은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이하 '정기계약'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구분	상품명	계약요금	비고
아날로그	· 묶음1(의무형)	월 4,000원 이하	
	· 묶음2(가족형)	월 7,000원 이하	
디지털	· 디지털 실속형 이용료	월 12,000원 이하	디지털셋탑박스 사용료 별도
	· 디지털 경제형 이용료	월 16,000원 이하	
	· 디지털 고급형 이용료	월 20,000원 이하	
	· 디지털 복지형	월 4,000원 이하	※약정할인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층 요금감면혜택은 제공하지 않음

※ 설치비

구분	내용	설치비	비고
아날로그 케이블TV 시설 설치비	· 단독주택	40,000원 이내	
	· 공동주택	60,000원 이내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실제공사비 추가되는 실제 공사비	
	· 복수 수신 설치	· 30,000원 이하	
	· 이전비	· 20,000원 이하	
· 재연결비, 덕내이전비			

구분	내용	설치비	비고
디지털 케이블TV 시설 설치비	· 단독주택	40,000원 이하	종합유선방송 이용 설비 설 치 작업에 소요된 제 공사비
	· 공동주택	60,000원 이하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실제 공사비 · 추가되는 실제 공사비	
	· 복수 수신 설치	30,000원 이하	
	· 이전비	20,000원 이하	
	· 재연결비, 덕내이전비	10,000원 이하	

※ 장비 임대료

구분	내용	금액	비고
디지털 셋톱박스 사용료	디지털 셋톱박스의 월 사용료 및 유지 보수비용으로 매월 부담	대당 월 5,000원 이하	
케이블 및 스마트카드 분실, 훼손비	케이블카드 훼손 및 분실	개당 40,000원 이하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함
	스마트카드 훼손 및 분실	개당 20,000원 이하	
디지털 셋톱박스 및 리모컨 분실, 훼손비	· 디지털 셋톱박스 분실시 · 디지털 셋톱박스 훼손시 · 리모컨 분실 및 훼손시	셋톱박스 사양에 따라 실비 부담 셋톱박스 사양에 따라 실비 부담 10,000원 이하	
디지털 셋톱박스 보증금	대여 디지털 셋톱박스의 반환· 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 써 최초 가입 시 부담	대당 50,000원 이하	

### 3. 약정 및 결합할인

※상품별 약정 기간별 요금할인 산정방식

- ① (할인내용) 고객이 사용기간을 회사와 사전 계약하고,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 ② (할인율) 서비스 정기계약할인

항목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할인액 (실속형할인액)	-	2,000 (2,000)	4,000 (4,000)	6,000 (5,000)	7,000 (6,000)
실속형	12,000	10,000	8,000	7,000	6,000
경제형	16,000	14,000	12,000	10,000	9,000
고급형	20,000	18,000	16,000	14,000	13,000

※ 단, 디지털방송만 해당

※ 결합상품 할인 : 서비스 정기계약 할인 금액에서 추가로 결합할인을 만큼 할인 함.

대상상품	결합상품 내용	해당 요금	할인규모																								
DPS	초고속인터넷+아날로그케이블TV	무약정 기본이용료	-아날로그케이블TV 및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 할인. <table border="1"> <tr> <td>약정기간</td> <td>무약정</td> <td>1년</td> <td>2년</td> <td>3년</td> <td>4년이상</td> </tr> <tr> <td>아날로그 케이블TV</td> <td colspan="5">1,000원 정액할인</td> </tr> <tr> <td>초고속인터넷</td> <td colspan="5">20%</td> </tr> </table>	약정기간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아날로그 케이블TV	1,000원 정액할인					초고속인터넷	20%										
약정기간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아날로그 케이블TV	1,000원 정액할인																										
초고속인터넷	20%																										
DPS	초고속인터넷+디지털케이블TV	무약정 기본이용료	-디지털케이블TV 및 초고속 인터넷 기본료 할인. <table border="1"> <tr> <td>약정기간</td> <td>무약정</td> <td>1년</td> <td>2년</td> <td>3년</td> <td>4년이상</td> </tr> <tr> <td>아날로그 케이블TV</td> <td colspan="5">30%</td> </tr> <tr> <td>초고속인터넷</td> <td colspan="5">30%</td> </tr> </table>	약정기간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아날로그 케이블TV	30%					초고속인터넷	30%										
약정기간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아날로그 케이블TV	30%																										
초고속인터넷	30%																										
DPS	인터넷전화+방송(아날로그케이블TV/디지털케이블TV)	기본이용료	-방송 결합 시 인터넷전화 기본이용료 4,000원에서 50% (2,000원)할인. (무약정~4년약정)																								
TPS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아날로그케이블TV	무약정 기본이용료	-아날로그케이블TV 및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기본료할인. <table border="1"> <tr> <td>상품명</td> <td>무약정</td> <td>1년</td> <td>2년</td> <td>3년</td> <td>4년이상</td> </tr> <tr> <td>아날로그 케이블TV</td> <td colspan="5">1,000원 정액 할인</td> </tr> <tr> <td>초고속인터넷</td> <td colspan="5">20%</td> </tr> <tr> <td>인터넷전화</td> <td colspan="5">50%</td> </tr> </table>	상품명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아날로그 케이블TV	1,000원 정액 할인					초고속인터넷	20%					인터넷전화	50%				
상품명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아날로그 케이블TV	1,000원 정액 할인																										
초고속인터넷	20%																										
인터넷전화	50%																										
TPS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디지털케이블TV	무약정 기본이용료	-디지털케이블TV 및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기본료 할인. <table border="1"> <tr> <td>상품명</td> <td>무약정</td> <td>1년</td> <td>2년</td> <td>3년</td> <td>4년이상</td> </tr> <tr> <td>디지털케이블TV</td> <td colspan="5">30%</td> </tr> <tr> <td>초고속인터넷</td> <td colspan="5">30%</td> </tr> <tr> <td>인터넷전화</td> <td colspan="5">50%</td> </tr> </table>	상품명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디지털케이블TV	30%					초고속인터넷	30%					인터넷전화	50%				
상품명	무약정	1년	2년	3년	4년이상																						
디지털케이블TV	30%																										
초고속인터넷	30%																										
인터넷전화	50%																										

※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전화의 장비사용료는 별도입니다.

※ <위의 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만기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2013년 12월 31일 이전 결합상품 요금제 가입고객은 약정만료시까지 기존 요금제에 적용됩니다. (서경방송 홈페이지 이용약관 참조)

※ 결합할인의 적용은 해당 이용고객의 결합서비스 가입시점부터 적용하고, 결합 대상의 이용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결합 할인은 디지털케이블방송(실속형, 경제형, 고급형), 초고속인터넷(기본료), 인터넷전화(기본료)에 적용되며 각 요금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 받습니다.

#### 4. 요금의 감면

대 상	적용기준	감면율 (기본이용료)	증빙서류	
자연인	심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30%	각 대상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단,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30%	
	저소득층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 가족 1인	30%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30%	
	광주 민주화 상이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30%	
	3자녀 가정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직계자녀 명의로 신청한 회선(단,가정용에 한함)	30%	
참전용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658호에 근거하여 보존청으로부터 참전 용사증을 발급받은 참전용사	30%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사본 1부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복지단체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		30%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고등교육법에서 지정한 특수학교		30%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아동복지시설		30%
	국가유공자 단체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속한 단체	30%	

- 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감면을 대상 1항목만 적용합니다.
- ② 1인 1회선에 한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 ③ 유료 정보 서비스 이용료 및 유료 부가서비스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사무용서비스, 특수사무용서비스(PC방), 교육용서비스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⑤ 요금감면 대상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5. 계약의 변경.

- ① **(계약의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중지,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하며, 이용자가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② **(방송채널구성변경관련 고지사항)** 사업자는 약관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야 하며, 채널상품 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패키지의 구성이 변경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패키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4주일 동안에 전체 운용 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전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할인혜택 또는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패키지"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6. 요금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요금 납입 방법)** 이용자는 해당 월의 서비스 사용료과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후불납부를 원칙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합의하에 납부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의 신청기한 및 회신기한)**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 7.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 ① **(서비스 일시 정지)**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 정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7일 이전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 정지를 신청한 최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은 1년 내 총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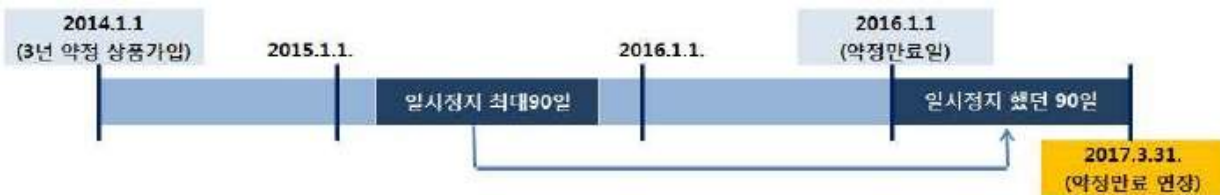
② **(서비스의 이용 중단)** 이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 휴지)**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 경우 휴지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8. 손해배상

① **(방송장애 보상 시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9. 해지

① **(해지방법)**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 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업자는 해지 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② (계약완료 통보 기간 및 재계약 절차)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회사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고객 등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직권해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장비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   |
|---|
| ①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 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②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③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10. 위약금부과.

### ① 위약금의 종류

구분	항목	내용
할인금액	약정할인액 반환금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설치비할인	설치비 할인 규정에 의거 할인 받은 금액
할인금액	장비임대료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혜택금액	사은품	가입 시 받은 사은품 금액

### ② 위약금 산정식

구분	적용	적용 방법
위약금	약정기간내 해지시	1. 이용요금 할인 반환금 : (사용기간 이용요금 - 약정기간 이용요금) × 이용개월수 2. 모뎀임대료 할인 반환금 : (사용기간 임대료 - 약정기간 임대료) × 이용개월수 3. 가입설치비 면제 반환금 : 면제된 가입설치비 (단, 1년이상 사용시 면제) 4. 이용요금 면제 반환금 : (실 면제개월수 - 사용기간 면제개월수) × 약정이용요금 * 사용기간 할인을 적용 : 1년 미만시 무약정 실면제개월수, 2년 미만시 1년약정 실면제 개월수, 3년 미만시 2년약정 실면제개월수, 4년 미만시 3년약정 실면제 개월수로 적용한다. * 결합할인 : 이용개월수 × 결합할인액 => 일부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은 기존 결합상품으로부터의 혜택과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변경 결합상품으로부터의 혜택 간 차이로 산정
	약정기간 단축시	☞ 정기계약 할인반환금 = (변경후 약정이용료 - 최초약정이용료) × 사용개월 수 × (1 - 사용개월 전월수/100) ☞ 장비사용 할인반환금 = (변경후 약정임대료 - 최초약정임대료) × 사용개월 수 × (1 - 사용개월 전월수/100)
변상금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	☞ 변상금 : [1 - (사용개월 수/60개월)] * 장비가격(모뎀판매가격)
	망·손실시 A/S 등	☞ 실비정산
참고사항		※ 잔존 약정개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30일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사용개월 전월 수 : 할인혜택 받은 월수 - 1 -> 사용기간에 따라 가중치 적용으로 실 반환금 감소효과 ※ 만기 재약정도 신규가입과 동일한 위약금 적용

③ 위약금면제요건 :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 방송구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시
5.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6. 군입대, 또한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7.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8.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④ 위약금 산정 예시.

※ 디지털 실속형 상품 3년 약정 상품 가입 후 13개월차 해지 할 경우.

- 이용료 할인 반환금 :  $(10,000\text{원} - 8,000\text{원}) \times 13\text{개월} = 26,000\text{원}$ .
- 셋탑사용료 할인 반환금 :  $(4,000\text{원} - 3,000\text{원}) \times 13\text{개월} = 13,000\text{원}$
- 설치비 위약금 : 1년 경과 되어 미 청구 함.



